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86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엄샛별 의원

1. 제안이유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중복지원 제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3조

2)「청소년기본법」 제8조

2)「청년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2. 5. ~ 2024. 2.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발굴을 위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정서적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의료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